[別表의4] <新設 1963·6·8>

準工業地域안에 建築할 수 없는 建築物

(1)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을 經營하는 工場

1. "銃砲火藥類團束法"에 規定하는 火藥類의 製造
2. 鹽素酸鹽類·過鹽素酸鹽類·硝酸鹽類·黃燐·赤燐·硫化燐·金屬카리움·金屬나토리움·마구네슘·바리움·3硫化炭素·매타노을·알콜·에테르·아세톤·硝酸에스테르類·나트로세루로오스·벤졸·도루오르·기시로르·비구린酸·비구린酸鹽類·데레삔油 또는 石油類의 製造
3. 성냥의 製造
4. 세루로이드의 製造
5. 니트로세루로오스製品의 製造
6. 비니코오스製品의 製造
7. 合成染料 또는 그 中間物, 顔料 또는 塗料의 製造(칠 또는 水性塗料의 製造를 제외한다)
8. 溶劑를 사용하는 고무製品 또는 芳香油의 製造
9. 乾燥油 또는 溶劑를 사용하는 擬草紙布 및 防水紙布의 製造
10. 溶劑를 사용하는 塗料의 加熱乾燥
11. 石炭까스類 또는 코오코스의 製造
12. 壓縮까스 또는 液化까스의 製造(製氷 또는 冷凍을 目的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鹽素·臭素·요오드·硫黃·鹽化硫黃·普通化水素酸·鹽酸·硝酸·燐酸·苛性소오다·소오다灰·漂白粉·次硝酸蒼鉛·亞硫酸鹽類·디오硫酸鹽類·砒素化合物·鉛化合物·시안化合物·바리움化合物·銅化合物·水銀化合物·코로로호름·4鹽化炭素·호루마링·스루호나알·구리세링·이하치올스루혼酸안몬·酢酸石炭酸·安息香酸·단닝酸·아세트아니리드·아스피링 또는 구아야고올의 製造
14. 蛋白質의 加水分解에 의한 製品의 製造
15. 油脂의 採取·硬化 또는 加熱加工
16. 비누·후아구치스 또는 合成樹脂의 製造
17. 肥料의 製造
18. 製紙
19. 製革·아교의 製造 또는 毛皮 또는 骨의 精製
20. 아스팔트의 精製
21. 아스팔트·콜탈·木탈·石油蒸溜産物 또는 그 殘渣를 原料로 하는 製造
22. 세멘트·石膏·硝石灰·生石灰 또는 카아바이트의 製造
23. 金屬의 溶融 또는 精練(活字 또는 金屬工藝品의 製造를 目的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24. 電氣用 카아본의 製造
25. 金屬厚板 또는 形鋼의 工作으로서 鋲打 또는 孔埋作業을 隨伴하는 것

26. 鐵釘類 또는 鋼球의 製造

27. 伸線·伸管 또는 로오라를 사용하는 金屬의 壓延

(2) (1)중 1 내지 4 또는 12의 物品, 可燃性까스 또는 카아바이트의 貯藏 또는 처리에 供하는 것